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대 및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실태조사〉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02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안 제32조의5제1항 등)	2
2.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과태료 부과(안 제32조의5제5항부터 제7항, 안 제76조제1항 및 제3항)	7
3. 이용자 정보의 제공 관련 청구 대상 확대 (안 제44조의6제1항)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1. 21.

다. 회 부 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Ⅲ. 검토의견

1.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안 제32조의5제1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
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 및 제44조의6에 따른 이
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함(안 제32조의5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u>제공자등</u> 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 ----- <u>제공자로서</u> ----- ----- ----- ----- ----- ----- -----.
<신설>	1. <u>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u>

<신 설>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u>제공자등</u>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제공자가----- -----.
--	--

다. 검토사항

- ‘국내대리인 제도’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사업자로서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임.
- 이러한 국내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8년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에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관되어, 현재는 자료제출 의무만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로 남아 있음.
- 다만 최근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의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이용자 불만 처리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인 바, 그 입법취지에 공감함.
- 참고로, EU 디지털 법제 또한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차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확대하는 추세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추가하는 업무를 국내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함.
- 국내대리인은 이용자 정보 등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해외 본사가 보유한 정보를 전달받는 연락 창구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다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 실제로도 국내대리인과 해외 본사 간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질적 규제 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음.¹⁾.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해외 본사의 실질적인 협조 없이 정보 제공 의무가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접근·전달에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계약상 내지는 법령상 장치를 마련해야함.

○ 둘째,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포괄하게 되므

1) 윤혜선,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EU 디지털 법제 분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76호, 2025.3

로 국내대리인 및 그를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거나 구체적으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가 어떠한 업무를 가리키는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에 수반되는 민원 검토, 판단 및 이행 등의 역할은 본사 수준에서 결정하고 수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국내대리인이 불만처리 업무를 담당한다면 사실상 해외 사업자의 대표사무소·영업소로 기능할 수 있어 한미FTA에 따른 현지주재 의무 금지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과태료 부과(안 제32조의5제5항부터 제7항, 안 제76조제1항 및 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대리인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5제5항부터 제7항).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가 아닌 자를 지정한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안 제76조제1항제2호의7, 제2호의8 신설),

국내대리인 제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3항제2호의5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u>지정</u>) <u><신 설></u>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u>지정 등</u>) <u>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u> <u>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u>

<신 설>

<신 설>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 현황

2. 제1항 각 호의 업무 현황

3.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국내대리인 간 연락체계 구축 현황

4. 그 밖에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대리인 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6. (생략)

<신설>

<신설>

3. ~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1. ~ 2의6. (현행과 같음)

2의7.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의8.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 12. (현행과 같음)

② -----

1. ~ 4의2. (현행과 같음)

<삭제>

4의4. (현행과 같음)

③ -----

1. ~ 2의4. (생략) <u><신설></u> 3. ~ 24. (생략) ④ (생략)	---. 1.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u>제32조의5제6항에 따른</u> <u>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u> <u>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u> <u>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u> 3.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되어 있을 뿐 그러한 제도 운영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미지정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제

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 특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대리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한 제도 도입으로 보임.

○ 다만,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밖에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국내대리인 제도가 주로 해외 소재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 그러한 기업으로 하여금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그러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국제통상 문제로의 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 파악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과태료 상향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의 정보 게재·유통으로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법 문언만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²⁾,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국내대리인’이라는 용어를 법

2)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에 포함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임.

- 다만, 제44조의6제1항은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전제로 하는바, 국내대리인을 청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이 직접 보유하는 정보에 한정되는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확보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되는지 등 ‘보유’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에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의 권리침해 피해자가 국내대리인이 보유하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8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